

## 2020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380개사 내외
  -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 [붙임1]의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35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 `20년 1차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러시아항공조명인증(러시아), NPRA(말레이시아), Dubai Civil Defence(아랍에미리트), EN 15267(유럽), CAPA(이집트), BKI(인도네시아), CRCC(중국), KKDIK(터키), ACS(프랑스), ICC(필리핀), AFRDI(호주), HKSM(홍콩)
      -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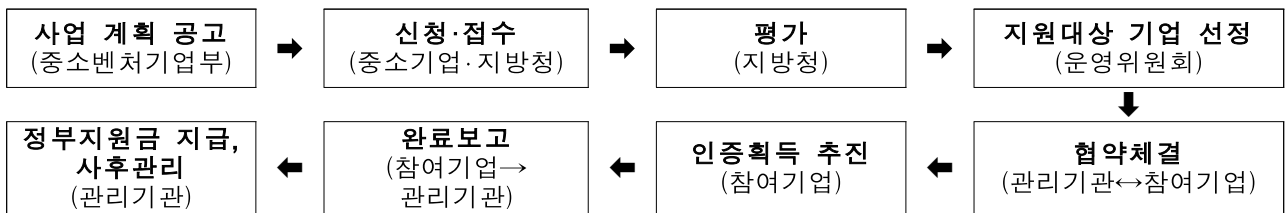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천원)	지원비율		인증분야별 개별한도 <sup>(2)</sup>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 <sup>(1)</sup>	100,000	70%	50%	[붙임2] 참조
(1)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붙임 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 추진절차



##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은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첫걸음기업 또는 소·부·장기업 추가 선정(지원예산의 각 10% 범위 내)

\* 선정방법은 하단 참조

##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중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18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 \* 단, 신규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바이어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하나, 지원 완료 후 2년 내에 해당 국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비용을 신청하는 기업
-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5월 6일(수) 09:00 ~ 2020년 5월 29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4. 평가, 선정 및 과제추진

##### □ 평가 : 서면 평가

- 지방청에서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 항목 :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수출성장성 및 다변화, 수출의지 등
-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제외 대상인 기업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함

##### □ 선정

- 관리기관에서 전문가 7인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중소기업 또는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심사 후 추가 선정(15억원 규모)**

\* [붙임 5]의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이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수출국 봉쇄 등으로 ‘19년 1분기 대비 ‘20년 1분기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신청시 “[붙임4]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현황” 제출 필수)

- **첫걸음기업\* 및 소·부·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예산의 각 10% 범위 내에서 참여기업 추가 선정**

\* “첫걸음기업”이란 SIMS(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16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

\*\* “소·부·장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에 의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http://www.mctnet.org/index.jsp> 홈페이지 참조)

##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http://www.exportcenter.go.kr)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

## 5. 기타 유의사항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50% 또는 70%)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 만일, 제안에 가담한 기업(컨설팅기관 등)에 대해 관리기관에서는 사업비 환수,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 협약금액은 “[붙임2]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6. 문의처

###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전화번호	FAX	주 소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3~8	02)507-8118	(13810)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6	02)2110-0663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지방청	051)601-5161	051)341-0364	(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55 벅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울산지방청	052)210-0063	052)283-0354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1층)
대구·경북청	053)659-2244	053)626-8771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4	062)366-9671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광주나라키움통합청사
경기지방청	031)201-6946	031)201-6949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031)820-9039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032)450-1136	032)818-8364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청	042)865-6150	042)865-6159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1	033)260-1679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27	043)235-2494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남지방청	041)415-0608	041)415-285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3	055)262-5012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064)753-8759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붙임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435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DR (공기정화률인증)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 관리제도)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HIRF (고강도전자기장)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복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MIL-STD-901D (미국해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 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 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BACL,CSA,CSL,FM,IAPMO, ITSNA,MET,NNA,NSF,QAI,QPS, SGS,SWRI,TUVNorth,TUVPTL,T UVSUD,TUVPSG,UL19개기관)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유럽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 마크)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 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씸)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에 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산업용제품인증)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일본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티평가및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MDA (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 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JATE,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신북방)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물가공품의품 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 calDevices)		
말레이시아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 관리청인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FDA (대만의료기기)
태국 (신남방)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KKDIK (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신남방)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MotorVehicleRegulationApproval)	
인도네시아 (신남방)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 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MSDS (중국물질안전보건자료)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hina RoHS (중국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품수관관련안전제품 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구.CFDA- 중국의료기기허가등록)	NMPA (구.CFDA- 중국화장품허가등록)	SAMR (구.CFDA-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 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신식품원료및첨가제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RETIE (변압기강제인증)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리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 화장품등록	
호주	ACE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 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장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 원회)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리 트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전자기기인증제도)	EQM (아랍에미리트제품 적합성마크)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G-Mark (GSO통합인증)		
이스라엘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b>우크라이나 (신북방)</b>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b>미얀마 (신남방)</b>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국제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 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 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 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소프트웨어개발역량평가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신북방)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캐트적합성테스트)	FAIR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업규격)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신남방)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 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 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 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 마크)
	OCS	OE	OIML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유기농섬유인증)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전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철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시스템 인증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s://www.osha.gov/dts/otpc/nrtl/nrtllist.htm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9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9개기관: ARL, BAEL, BVCPS, CSA, FM, IAPMO, ITSNA, MET, NNA, NSF, QAI, QPS, SGS, SPTL, SWRI, TUV North, TUV SUD, TUV PSG, UL)
-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붙임 2】

##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단위 : 천원)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유럽	CE	전자기기 (LVD, EMC, RED)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1개 시험	○	○	600	2,800	2,000	DoC-CEEL1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중 2개 시험	○	○	800	4,700	3,400	DoC-CEEL2		
			유무선통신, 전기안전, 전자파 시험	○	○	2,200	8,200	5,900	DoC-CEEL3		
		기계 (MD)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	1,100	4,200	3,000	DoC-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 4에 포함되는 경우	○	○	2,200	4,900	3,500	CoC-CEMD2		
		의료기기 (MDD)	CLASS I	○	○	3,000	7,000	5,000	DoC-CEME1		
			CLASS II	○	○	10,000	<b>21,000</b>	<b>15,000</b>	CoC-CEME2		
			CLASS III	○	○	15,000	<b>21,000</b>	<b>15,000</b>	CoC-CEME3		
		방폭기기 (ATEX)	-	○	○	5,000	21,000	15,000	CoC-CEEX		
		압력용기 (PED)	-	○	○	1,500	7,000	5,000	CoC-CEPED		
		건설자재 (CPR)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는 경우	○	○	1,200	5,800	4,200	DoC-CECPR1		
			EC지침 System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5,000	21,000	15,000	CoC-CECPR2		
		완구 (TOY)	-	○	○	600	2,900	2,100	DoC-CETOY		
		기타제품군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600	4,100	2,900	DoC-CEETC1		
			해당 제품군의 EC지침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	○	2,800	7,000	5,000	CoC-CEETC2		
		RoHS 시험을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	○	-	2,200	1,600	R(추가코드)
		광생물학적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1,900	1,300	B(추가코드)
		EU RoHS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2,200	1,600	DoC-ROHS
		REACH (EU)	공산품	SVHC 및 후보물질 비사용 증명용 시험		-	○	600	7,000	5,000	DoC-RCH1
			화학물질	본 등록		○	○	5,000	21,000	15,000	CoC-RCH2
e-mark	자동차관련 부품	-		○	○	2,800	5,700	4,100	CoC-EMR		
CPNP	화장품	-		2,300	○	500	4,800	3,500	DoC-CPNP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건설링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중국	NMPA (구. CFDA)	의료기기	CLASS I	○	○	10,000	11,200	8,000	DoC-NPME1
			CLASS II	○	○	30,000	21,000	15,000	CoC-NPME2
			CLASS III	○	○	30,000	21,000	15,000	CoC-NPME3
		화장품	비특수 제품 등록	500	○	1,800	3,600	2,600	DoC-NPCS1
			영·유아 제품 등록	500	○	3,000	4,500	3,200	DoC-NPCS2
			특수 제품 허가	500	○	3,000	5,300	3,800	CoC-NPCS3
			자외선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	-	5,600	4,000	U (추가코드)
	CCC	공산품	중국강제인증	○	○	3,000	7,000	5,000	CoC-CCC
		소방제품		○	○	9,000	21,000	15,000	CoC-CCF
	중국자율 안전인증	공산품	-	○	○	3,000	7,000	5,000	CoC-CVC
	GB Test	기타제품군	GB Test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	600	1,400	1,000	DoC-GBT
	중국식품 수화인등 록	식품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라벨링	-	○	1,500	1,100	800	DoC-SRFD1
	SAMR	식품	보건식품 등록	○	○	20,000	21,000	15,000	CoC-SRFD2
			보건식품 허가	○	○	40,000	70,000	50,000	CoC-SRFD3
China REACH	화학물질	-	○	○	30,000	21,000	15,000	DoC-CRCH	
미국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의료기기 공장등록)	○	-	600	4,200	3,000	DoC-FDME1
			510(k) (시판 전 신고)	○	○	5,000	21,000	15,000	CoC-FDME2
			PMA (시판 전 승인)	○	○	5,000	21,000	15,000	CoC-FDME3
	기타제품군	등록 또는 검사	○	○	1,000	1,500	1,100	DoC-FDETC	
	NRTL	공산품	부품 또는 제품 등 기기	○	○	800	11,200	8,000	CoC-NRTL1
		원자재	플라스틱, 전자재 등 원재료	○	○	800	21,000	15,000	CoC-NRTL2
	FCC	Declaration/ Verification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	○	400	2,000	1,400	DoC-FCC1
		Certificate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	1,600	5,600	4,000	CoC-FCC2
	ASME	압력용기/ 보일러 등	U, S, PP 등 Stamp 등록비용	○	-	2,000	4,200	3,000	CoC-ASME
			AIA, Team Service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	○	○	3,000	16,800	12,000	A (추가코드)

해당 국가	지원 규격명	제품분야	세분류	인증획득비용 인정여부			정부지원금 한도액		분야 코드
				인증	시험	컨설팅 인정비용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일본	PSE	전기전자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600	3,500	2,500	DoC-PSE1
			특정전기용품* (인증서 발급)	○	○	800	5,700	4,100	CoC-PSE2
	일본무선 통신인증	무선기기	무선 설비의 공사 설계 인증, 무선단말기의 설계 인증 등	○	○	1,300	7,000	5,000	CoC-JAMC
국제 / 기타	WPS	용접	용접절차 인증	○	○	600	6,300	4,500	CoC-WPS
	HALAL	식품/ 화장품	식품, 화장품 등	○	○	8,000	11,200	8,000	CoC-HAL
	IECEX	방폭제품	-	○	○	5,000	21,000	15,000	CoC-IECX
	선급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		○	○	600	2,500	1,800	CoC-SHIP1
		Type Approval (형식 승인)		○	○	1,200	5,600	4,000	CoC-SHIP2
	기타	인증서 미발행		○	○	1,000	3,900	2,800	DoC-ETC1
인증서 발행		○	○	2,800	9,800	7,000	CoC-ETC2		
고비용인증*				○	○	7,000	100,000		H (추가코드)

- \* 인증별 한도금액 합산액은 기업당 한도금액(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고비용인증 :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0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00천원 적용 가능(단, 신청당시 사전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인증 Scheme 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인증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인증의 기타인증분야로 신청가능
- \* CSA, TUV 인증중 OSHA(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에서 지정한 적용범위와 해당규격으로 시험한 경우에는 NRTL로 지원
-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또는 70%비율로 지원됨
- \*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에 한하여 소요비용을 인정함  
(<http://www.exportcenter.go.kr:9091/info/concList.do?key=9093>)
- \* 컨설팅인정비용은 정해진 분야코드를 따르되 분야코드 추가의 경우 더 높은 비용을 따름(단, ASME인증의 경우 AIA 등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코드 A의 인정비용을 따름)
- \* 완료보고서 건당 10,000천원 이상 컨설팅비용 인정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일지 제출 필수



**【붙임 3】**

**2020년 제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기업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전산 업로드)(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년도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산 업로드)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인증획득 필요·가능성	시험·인증기관 접수증/견적서	-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및 견적서 등 *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해외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 된 경우만 인정 * 국내특허·상표 미인정
	인증획득건수	- 현재 보유중인 인증 중 유효기간 내 인증만 인정 * 동일한 인증은 1건으로 인정함 * 공고된 해외규격인증(435개)에 한함
	수출계획	- 수출계획서(별첨 제1-5호 서식) 작성 제출 * 필수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offer sheet, P/O(Purchase Order), 바이어레터 등 포함 * 계약서 작성일자 기준 '19년, '20년에 한함
수출성장 및 다변화	수출 성장성	- 제출생략 * 관세청 미 집계 무체물(소프트웨어, 전자서적, 음향물 등) 수출실적을 보유한 경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별도 제출
	신규수출국가 개척 도전기업	- 제출생략
수출의지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 수출관련 (해외인증포함) 교육 이수	- 교육 수료증 제출('19년, '20년 교육 수료증) * 수료증에 기업명 미기재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이 수출 관련 전공자	-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경영주 또는 수출전담인력이 수출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자격증 보유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1인에 한함
	수출 전담조직 보유	- 조직도(인력현황포함), 전담 직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주관기관이 작성한 참가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첨 제1-4호 서식 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해외지사 보유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 활동	- 외국어카탈로그 사본1부	
가점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또는 여성기업법 제2조1호에 의한 여성기업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브랜드 K 기업, 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	- 제출생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협력(상생) 모델 승인기업	
	청년 글로벌 마케터 양성 사업	
KSC 프로그램 참여 또는 입주기업		
기타	코로나19 피해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현황(별첨 제1-6호 서식) 작성 제출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 홈텍스 홈페이지 업종선택 캡처 화면 제출

【붙임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코로나19피해 기업 현황**

<p><b>피해현황</b></p>	<p>예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 등으로 인한 수출국(oo국가)의 봉쇄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 파기(oo천불) 등 피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출실적 oo감소</p> <p>ex) 위 내용은 작성예시이니 자유롭게 변경하여 신청요함</p>
<p><b>대응조치계획</b></p>	<p>예시) 신규 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지역 다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각 수출대상국의 해외 규격인증을 신규 획득 하고자 추진중으로 인증획득 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사업에 신청함</p> <p>ex) 위 내용은 작성예시이니 자유롭게 변경하여 신청요함, 신규시장 확대 및 바이어의 요청 레터, 인증요구 e-mail 등 증빙서류 첨부</p>
<p><b>기타 지원요청사항</b></p>	<p>예시)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감소로 oooo 등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p> <p>ex) 위 내용은 작성예시이니 자유롭게 변경하여 신청요함</p>

【붙임 5】

**감염증 예방·진단 업종**

품목명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바이오시밀러, 면역치료, 장내미생물치료, 경피약물전달, 치료용항체, 단백질치료법, 개량신약, 혁신신약,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 진단시스템(분자진단), 유전자 진단예측,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기기(체온계 등), 차세대 줄기세포, 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기능성 스텐트, 스마트알약, 첨단의료기기,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호흡기 감염증 검사기, 진단시약, 감염병 확산 맵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 감염증 예방·진단 분야 해당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확인

\* 신청시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하기의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필요

- 개인사업자 : 홈텍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 업종선택 확인
- 법인사업자 : 홈텍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 > 업종선택 확인